

쌀을 수입하시는 분께

(お米を輸入される方へ)

수입하는 경우

- 해외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량법, 관세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미곡등 수입납부금 및 관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- 단,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납부금 및 관세 면제 적용이 인정되고 있으며, 개인용(수입하시는 분이 직접 사용하는 쌀)으로 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물품의 일반적인 면세규정 외에 과거 1년간의 수입수량이 100kg 이하라는 것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면제요건이 됩니다.
- 사전에 가까운 지방농정국·지방농정사무소 또는 도착한 항구 및 공항의 식물검역 카운터에 수입수량을 신고하여 주십시오.
- 납부금 및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택배편 및 국제우편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, 수입자가 일본에 입국할 때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이 신고가 필요합니다.
-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고 쌀을 수입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.

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 사전에 가까운 지방농정국·지방농정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 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.

그리고 이 때 운전면허증 등 수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소,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그 자리에서 과거 1년간의 수입수량을 확인한 후에 신고서 용지의 세관제출용과 본인보관용의 2장을 돌려드립니다.
- 그리고 1년간의 수입수량 합계가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수속 전에 별도로 미곡등 수입납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방농정국·지방농정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

2 통관수속을 하실 때 세관제출용 신고서를 세관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.

.....이것으로 수속은 완료됩니다.

해외여행시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쌀을 사 오시는 분

●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

도착한 항구 및 공항의 식물검역 카운터에 신고용지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식물방역소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.

그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(여권 등)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별송으로 수입하는 경우

귀국할 때의 입국시에 항구 및 공항의 식물검역 카운터에서 신고를 하거나 입국 후에 가까운 지방농정국 농정사무소 또는 식물검역을 받을 식물방역소에

신고서를 제출한 후 쌀의 통관수속을 하여 주십시오.

이 경우에 통관업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, 그 때는 수입자 본인의 주소,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(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.